

2016년도 건설공사 작성 및 설계기준

1. 설계일반 적용 기준

가. 목 적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비의 적정 산정 및 각종 사업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나. 적용범위

본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시행하는 제반공사에 이를 적용한다.

다. 적용방침

- 본 2016년 시행 설계기준 및 지침서는 2015년 표준품셈(국토교통부)에 의거 작성한 것이므로 이 표에 없는 일위대가와 표준품셈과 다른 사항, 유사한 공종의 품은 표준품셈을 확인 우선하여 작성·적용하여야 한다.
- 본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경우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예시된 것이므로 설계자가 현장여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 각종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www.g2b.go.kr),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2015. 11월호를 조사하여 적용하였으며, 사업에 따라 설계시점의 자재단가를 적용한다.
- 중기손료 계산은 2015년 표준품셈에 기재된 중기가격을 기준하고 환율은 2015. 12월 외환은행 매매 기준환율 **【1\$당1,157.7원】**을 적용하였음.
- 노임은 2015. 9월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으로 별첨 “개별직종 노임단가”에 의하였다.
- 유류단가는 2015. 12월 1주 기준 한국석유공사 발표자료(서울시 평균 판매가격)를 적용하였으며 설계시점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 기타 필요한 할증율은 현장여건에 따라 표준품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5.6.23. 조달청에 게시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제비율 적용기준 발표시 설계시점에 따라 변경 적용

별첨1) : 조달청 제비율(2015년 상반기)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시 경비 계상 대상 항목

- 가설비(현장 사무실, 창고, 가설 울타리, 안전 시설물 설치비 등)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예 : 시멘트, 흙관 등)

○ 비산먼지 발생억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등에 따라 계상.

○ 공사부대시설(가설사무실, 가설창고, 안전 보호책)은 품셈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을 적용 할 수 있다.

○ 사용 고재 및 기타 발생재의 처리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당시 미리 공제한다.

○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안내 현수막, 공사 안내문 배부, 보행자 통행로 확보 등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제 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라. 건설폐기물처리 등

1)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항(사업장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 처리에 따른 처리비용 설계반영 계획

○ 공사와 분리 발주함에 따라 2015.12월 현재 건설폐기물처리허가업체의 폐기물의 성상별 견적서, 물가자료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반영.

(단위 : 톤/원, 부가세별도)

구 분	신잔토개발(주)	대흥에코(주)	(유)도성개발	대우산업(주)	우 리 구 적용기준
폐콘크리트	21,000	18,000	19,343	19,800	18,000
폐아스콘	23,000	19,000	20,088	21,100	19,000
건설폐재류	33,000	27,000	30,855		27,000
혼합폐기물 (소각5%이내)	47,000	74,000	44,273	60,800	44,273

※ 부가세 및 폐기물운반비는 별도이며, 소각대상폐기물은 발생시 별도 단가 적용.
단,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 등 혼합폐기물은 김포매립지로 반출 후 고시가격 반영.

○ 건설폐자재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처리비, 잔토처리비

－ 공사감독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건설 폐자재의 재활용 등 현장 반출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준공 정산시 제반서류 및 감독관 확인에 의거 정확하게 정산하며, 비용계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국토교통부 훈령 등의 규정에 의한다. 잔토 또한 최대한 재활용으로 적용하고 감독관의 확인량으로 설계 변경, 또는 준공 정산시 정산해야 하며, 우리구에서 발생물량이 소량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단가로 처리한다.

3) 폐기물 운반비 산정을 위한 운반거리

구 분	금강도시환경(주)	진도환경개발(주)	(주)신잔토개발	우 리 구 적용기준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352-39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 163-34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527번길 4	최단거리 적용
운반거리 (Km)	40	30	47	30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471호)에 따라 운반비 산정시 용역 설계단계에서 처리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 운반거리별로 정산한다. 단, 운반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경우는 30km로 적용한다.

- 폐기물 배출장소에서 중간처리장으로 직접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공사여건에 맞도록 운반차량을 세분화(2.5톤 ~ 15톤 덤프트럭)하여 중간 사토장(집하장)까지 운반 후 처리업체 지정 장소로 최종처리.

4) 잔토처리

- 잔토운반(토사) 처리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 운반거리별로 정산한다. 단, 운반거리는 수도권매립지 운반거리(L=53.6km)를 초과할 수 없다.

5)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사발주 반영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공사장 석면비산방지조치, 공산품석면관리, 자연발생적 석면함유물질관리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사 등 발주(계약)시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작업복 등 뿐만 아니라, 특히 분진, 부스러기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석면은 필히 고형화 처리하여야 하므로 3종류의 폐기물을 명시하여 발주(계약)

※ 서울시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index.do>) 및 생활환경과-313호 (2012.01.06) 참조

마. 국토교통부 발표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적용

- 실적공사가격은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결정, 정기적으로 게재
- 국토교통부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가격이므로 계약수량, 난이도, 수급사항, 현장조건 등 제반여건에 따라 적용

※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활용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본 실적공사비 적용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212호) 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25호) 제9조에 의거 확정된 실적공사비를 『서울시 시행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시행방침(2007.3.7.)』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토록 하나,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실적공사비 적용제한)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기술심사담당관-19480호(2014.12.11) 참조]